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4. 6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31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유아숲체험원 조성·운영 등(안 제5조)
- 사업추진 등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○ 본 조례안은

-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4조(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)에서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고,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프로그램 운영방안,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5조(유아숲체험원 조성·운영)에서는 유아숲체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,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유아숲체험원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더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유아숲체험원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- 안 제6조(사업추진 등)에서는 시설 조성 및 운영, 전문인력 양성,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,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○ 검토 결과

-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으며,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25%를 차지하는 등 녹지가 부족한 실정으로, 유아들이 자연을 접하고 자연에서 활동하는 시간 또한 불충분함.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유아들의 신체활동 감소, 스트레스 증가,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 저하 등이 있음.
-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이 있으며, 해당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좁은 교실 밖으로 나와 다채로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산림 속에서 다양한 체험·탐방·학습을 통하여 신체건강 증진, 정서적 안정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, 유아기부터 산림의 중요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관련 조례는 없지만 2017년 3월부터 현재까지 「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원」을 운영하고 있음.
- 이에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관련 시설 조성, 전문 인력 양성, 프로그램 개발 등 유아 숲 교육의 전문성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6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5. .

발 의 자: 유승용, 이순우, 최봉희
이성수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유아숲체험원 조성·운영 등(안 제5조)
- 나. 사업추진 등(안 제6조)
- 다.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유아교육법」,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4. 5. 13. ~ 5. 17.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유아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아 숲 교육”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.
3. “유아숲체험원”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4. “유아숲지도사”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,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운영계획의 수립·시행)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

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2.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
4.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5.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
6.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유아숲체험원 조성·운영 등)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

위하여 유아숲체험원(이하 “체험원”이라 한다)을 조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체험원은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의 규정을 따른다.

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추진 등)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
2.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
3.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4.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
5.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
6.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,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·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